

전략물자 수출제한 정책	개정차수	최종 수정일
	1	2023.02.10

1. 목적

본 문서는 효성(이하 '회사')이 국제 안보 및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해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 전략물자 자율 수출관리를 성실히 이행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용어의 정의

- 2.1 '수출'이란 자국의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것을 말한다.
- 2.2 '전략물자'란 재래식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, 개발,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,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한다.
- 2.3 '대외무역법'이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말한다.

3. 적용범위

- 3.1 본 규정은 회사의 본사, 국내/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,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3.2 또한 임직원은 협력사, 대리점,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수출제한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3.3 다만,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해당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4. 이념

회사는 신인도 제고 및 지속 가능한 경영에 있어 전략물자 수출관리의 중요성을 상시 유념한다.

5. 방침

- 5.1 전략물자 수출 관리제도의 올바른 이행이 국제 안보 및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, 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.
- 5.2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 조직과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, 회사의 모든 조직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효율적·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.
- 5.3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,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대외무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 끝.